

"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, 보다 나은 KDHC"



한국지역난방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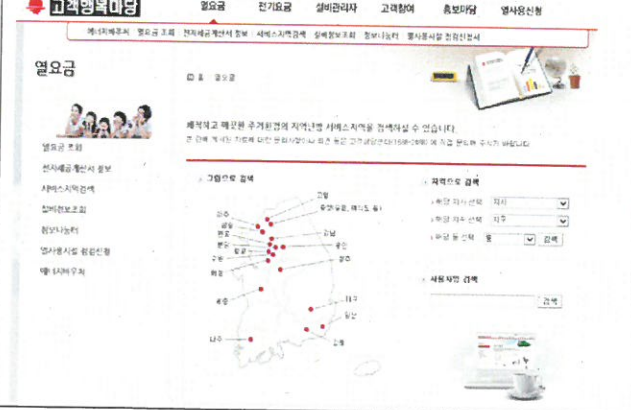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 목 지역난방 적기 열사용신청 및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지구 안내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우리공사 및 파주지역 집단에너지사업 고시지역 확인 방법 및 지역냉·방 설계를 위한 기준 안내와 관련입니다.
2. 우리공사는 귀 협회에 속한 건축사무소 및 설계사무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전국 18개 사업장에서 공동주택160만호, 건물 2,800여개소에 지역냉,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
3. 그 간 건축사 및 설계사님들의 지역난방 고시지역에 대한 문의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, 우리공사는 지역난방 설계시 사전 편의를 위해 고시지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.
4. 이에, 건축물 설계 전 지역별 고시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귀 협회에 소속된 건축사무소 및 설계사무소에 안내를 부탁드립니다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라오며,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건축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가. 지역냉·난방 의무고시 지역 확인

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	국가 열지도 시스템
<p>www.kdhc.co.kr</p>	<p>www.k-heatmap.com</p>
<p>홈페이지/고객행복마당/열요금/서비스지역검색/지역별의무고시지역</p>	<p>집단에너지 고시지역 확인</p>
	

나. 지역냉·난방 사용기준 (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, 제6조, 시행령 제8조)

구 분	적 용 기 준
공동주택 (부대복리시설포함)	○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(다세대주택 제외)
건 물	○ 난방의 경우, 열생산용량의 합이 <u>시간당 30만Kcal 이상인 열생산시설</u> ○ 냉방의 경우, <u>건축연면적이 3,000㎡ 이상인 건축물의 열생산시설 또는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Kcal 이상인 열생산시설</u>
기 타	○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지역냉,난방 도입을 희망 할 경우 지역별 지사와 협의 가능

다. 파주 지역난방 의무고시지역 : 교하택지개발지구, 운정1,2,3택지개발지구 끝.

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장



수신자 대한건축사협회장, 서울건축사회, 경기건축사회

결재

팀장 신선욱

부장 윤종원

지사장 ^{전결 12/30} 김상수

협조

시행 파주지사고객지원부-4324 (2020.12.30.) 접수

우 10443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380

전화 031-950-0515

전송 031-946-4796

/ sunogi70@kdhc.co.kr

/ http://www.kdhc.co.kr

/ 비공개(6)